

20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4. 08. 28(목), 14:00 ~

▣ 장 소 : 덕수궁 회의실

▣ 참 석 자 : 김학범, 류제현, 박양우, 백인성, 이광춘, 이두표
이홍식, 전영우, 정종수, 황재하, 이재근, 김 원
양경모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제천 의림지와 제림」 내 수리시설 개·보수	공개
2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녀 동상 건립	공개
3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	공개
4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홍도2구 여객선 접안시설 설치	공개
5	「보은 서원리 소나무」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6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7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주변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	공개
8	「단양 고수동굴」 내부 시설물 및 주변 정비	공개
9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규사광산 개발	공개
10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주변 휴게음식점 및 주택 신축	공개
11	「부여 구드래 일원」 내 백제 대종 종각 설치	공개
12	「부안 채석장 적벽강 일원」 내 및 「부안 격포리 후박나무 군락」 주변 태양광 모듈 설치	공개
13	「제천 의림지와 제림」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변경 허가	공개
14	「부산 영도 태종대」 내 **** * 생활관 건립	공개
15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내 사방댐 설치	공개
16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내 불영사 진입도로 확장	공개
17	「공주 고마나루」 내 탐방로 정비 및 휴게시설 설치	공개
18	「속리산 범주사 일원」 내 다목적 교육관 신축	공개

【보고사항】

19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개
----	------------------------	----

【심의사항】

천기 2014-08-01

1. 「제천 의림지와 제림」 내 수리시설 개·보수

가. 제안사항

「제천 의림지와 제림」 내 의림지 수리시설 개·보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천 의림지와 제림」 내 의림지 수리시설 개·보수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20호 제천 의림지와 제림
 -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산17-6
 - 지정일 : 2006. 12. 4.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의림지 수리시설 개·보수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산****
 - 신청내용
 - 사업목적 : ‘2013년 영호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진단등급이 “D등급” 분석되어 제체, 여수로 및 취수시설 등에 대한 보수 및 보강을 통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수혜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물의 안정성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문화재인 의림지의 현상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제당부 덧쌓기(L=50m)
 - 사면 보강(토사구간, A=779m²)
 - 사면 보강(여수로 방수로 암구간, A=447m²)
 - 구조물 보강(방수로 옹벽)
 - 사석 붙임(L=260m, A=1,300m²), 자연석 쌓기(L=67m, A=247.9m²)
 - 제당부 그라우팅 (1구간 L=10m, 2구간 L=70m)
 - 취수시설 스펀들 및 수문교체(1식)
 - 사업기간 : 허가일 ~ 2017. 12. 31일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

라. 검토의견 (*****)

- 「제천 의림지와 제림」 문화재 지정구역 내 수리시설 개·보수 건으로 ‘2013년 영호저수지(의림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진단 등급이 최하위인 D등급 판정을 받아 개·보수 하는 사항으로 의림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위원 현지조사 의견)

- 명승 제20호(2006.12.04) 「제천 의림지와 제림」의 의림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대 수리시설 중의 하나이며, 제방 위의 제림, 주변의 정자와 누각 등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역사적 경승지이지만, ‘2013년 영호저수지(의림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진단 등급이 최하위인 D등급 판정을 받음.
- 제방 안전기준선 높이보다 낮은 구간의 제방 덧쌓기, 누수지역의 그라우팅, 제방 사면의 석축 보강, 취수시설 교체 등이 의림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이 아니라, 저수지의 안전상 허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각종 공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석축의 재질은 현재의 석축과 같은 종류의 암석으로 쌓아야 함.
- 그러나 여수토(餘水吐) 방수로 지역의 노두가 발달한 폭포(용추폭포) 일대를 인공구조물로 덮는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수리시설 개보수 기간 동안 의림지의 물을 대부분 방류해야 한다면 수생생물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함.

바. 의결사항 : 보류

2.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녀 동상 건립

가. 제안사항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녀 동상 건립을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녀 동상 건립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일원
 - 지정일 : 1982.11.16.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녀 동상 건립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독도 접안시설)
 - 사업내용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녀 동상 건립(작품명 : 못다핀 꽃)
- (재료) 브론즈, (규모) 65×55×175cm
* “독도의 날(10.25)”에 맞추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초청 준공식 계획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접안시설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녀동상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보존 및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검토)

<*** 前문화재위원>

- 독도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이므로 문화재청은 그 문화재가 지닌 자연유산적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독도의 자연성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독도 관리에 절대 불가피한 시설물 이외의 것을 독도에 설치하려는 현상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해 온 역사를 지니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본 건 위안부 소녀상의 건립은 독도가 지닌 천연보호구역의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하는 처사로 평가되어 현상변경 허가를 불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의견은 상기한 소녀상이 지닌 국가 사회적인 의의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이 동상 건립위치가 문화재 지정구역이 아닌 곳이 되기를 권고하고자 하는 것임.

바. 의결사항 : 부결

3.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

가. 제안사항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으로, 2014년 제5차 문화재위원회 심의('14.5.28.) 결과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이 홍도 방파제의 건립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상세하게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제출 받아 재심의하기로 보류한 안건임.
-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관련 추진경과
 - '11.7.24.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고시(국토해양부)
 - '12.7.25. : 문화재청 검토의견 수렴 <문화재위원회 검토>
 - * “기존 방파제에 150m 연장”안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미미할 것이라는 검토의견 회신
 - '13.4.12. : 홍도항 방파제 보강공사 현상변경 허가(방파호안 및 방파제 100m 설치)
 - '14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 심의('14.1.22.) 결과 **부결**(내연발전소 등 해안부분 보강 사항 및 방파제 상부 시설물 설치 등이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
 - '14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 심의('14.4.25.) 결과 선형조정 지반조사 **부결**(지반 조사는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위치 확정 등을 선행 후 시행하되, 향후 현상 변경 허가 신청 시 조감도 및 기본설계도, 주민의견 등을 제출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 '14년 제5차 문화재위원회 심의('14.5.28.) 결과 **보류**(자료보완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번지 등
 - 지정일 : 1965.4.7.

(3) 신청내용

- 사업명 :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전면해상
- 사업내용
 - 동방파제 축조 150m, 기존 홍도항 내 주요시설물 보호, 기존 방파제 연계 전기인입시설, 항행시설·친수시설·등대 1기, 항로표지시설 등
 - 동방파제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시추조사 5개소 천공/수중 15m 뿔층, 직경 76mm), 표준관입시험 53회(1.5m 간격), 피에조콘관입시험 2회 등

(4)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5개월

(5)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동 건은 홍도항 정온수역 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해 동방파제를 연장·축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한 선형조정 및 지난 5월 문화재위원회 결과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의하는 사항임
-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 및 이를 위한 지반조사 시행에 따른 문화재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4.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홍도2구 여객선 접안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홍도2구 여객선 접안시설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홍도2구 여객선 접안시설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신안군수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번지 등

○ 지정일 : 1965.4.7.

(3) 신청내용

○ 사업명 : 홍도2구 여객선 접안시설 설치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산70번지 지선

○ 사업내용

- (접안시설) 길이 130m, 폭 8m (면적 1,040㎡)

* 콘크리트 블록식, 마루높이 DL (+)4m, TTP(50t급) 874EA

(4) 사업기간 : 2015~2019년(60개월)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동 건물은 홍도 2구 주민의 어업활동 피해예방과 관광유람선 및 여객선 접안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정온도 확보를 위한 접안시설 설치 사업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문화재 보존 및 주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보류

5. 「보은 서원리 소나무」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보은 서원리 소나무」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은 서원리 소나무」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52호 보은 서원리 소나무
 - 소재지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49번지 4호
 - 지정일 : 1988.04.3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번지 *호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660㎡, 건축면적 : 129.6㎡, 연면적 : 129.6㎡
 - 구조 및 층수 : 목구조 금속기와(벽체 황토벽돌), 주1동(64.8㎡), 부1동(64.8㎡)
 - 용도 : 단독주택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으로부터 25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1구역으로 기존건물 재·개축 허용

라. 검토의견 (*****)

- 동 건물은 보은 서원리 소나무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8.12)

<*** 문화재위원>

- 신청부지는 천연기념물 제352호 보은 서원리 소나무 동남쪽으로 10여m 이격된 지역으로 원래 전(밭)이었으나 최근 대추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임
- 단독주택 신축 부지는 기존 주택의 재·개축만 가능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으로 신축은 불가능한 지역이기에 문화재 보존 및 경관유지를 위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6.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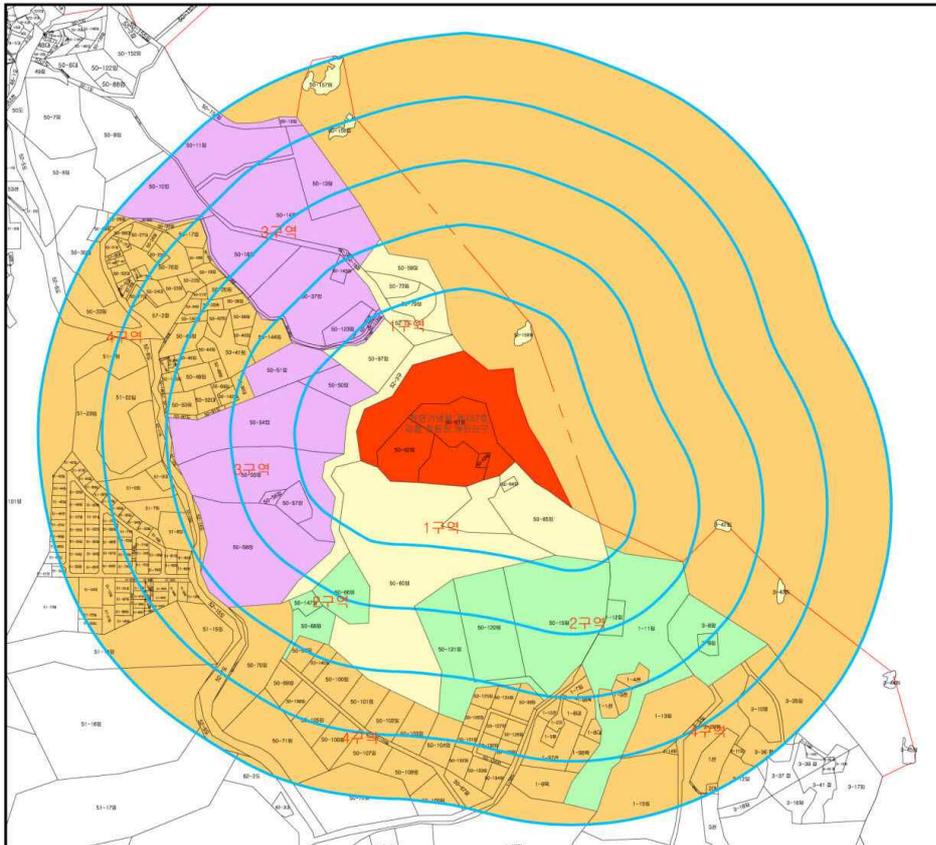
-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릉시장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37호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50-60 등
 - 지정일 : 2004. 4. 9
- (3) 신청내용
 - 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사지붕
1구역	○ 원지형 보전지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영향검토구역(개별심의)	
4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 지하굴착 및 발파 등 진동을 유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 ○ 법면, 석축, 옹벽의 설치를 위해 절토를 할 경우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허용기준 도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437호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 50-61외

범례

- 국가지정문화재
- 연속지적
- 허용기준권역(100~500m)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종자분	경사차분(≥10%이상)
1구역	○ 문화유산권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영향권구역(제정없음)	
4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 기존건축물의 범위내에서 개·모수 가능
○ 차의굴착 및 발굴 등 산물을 유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땅의, 석회, 중석의 설치물 위해 영향을 줄 경우 허용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상, 계단장, 승강기장, 굴뚝, 풍력발전 등 기타 시설의 위상을 포함 포함

축척 1 : 5,500

○ 위성사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437호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 50-61외

범례

- 국가지정문화재
- 연속지적
- 허용기준권역(100~500m)

축척 1 : 5,500

라. 참고자료(현지조사/8.25)

<*** 문화재위원>

- 강릉시에서 작성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대체로 무난하다고 판단되나 매우 불규칙한 지적도를 따라 허용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인하여 현상변경 허용 신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인접한 허용기준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됨
- 해안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각 허용구역의 조건에서 건물의 모양, 층수 제한, 건물의 도색 등에 세부적인 지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문화재위원>

- 해안단구는 전체 단구 지형이 현재와 같은 지형을 유지하고 있을 때 문화재적 가치를 가진다. 만일 단구 지형의 파식대지 형태를 훼손하게 된다면 학술적 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환경검토구역 전반이 현재의 지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더라도 천연기념물적 가치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도 문화재 관련 규제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 제안된 허용기준은 비교적 적절한 안이라 생각한다. 다만 지번 50-50임의 경우는 제3구역에서 제1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으로 보며, 또 지번 50-15임, 50-120임, 50-121임, 50-66임의 경우는 제2구역에서 제3구역으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

<*** 문화재위원>

- 부산, 울산, 경주, 울진, 동해, 강릉 등지의 동해안 지역에는 해안단구가 단속적으로 발달되어 있음
- 이들 해안단구는 신생대 제4기말의 한반도 지각운동의 특성과 해수면 변동 등 한반도의 자연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귀중한 자연유산임
- 이와 같은 동해한 해안단구의 자연유산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지역에서의 여러 인위적 행위(도로개설, 주거 및 근린생활 시설 건축, 공장부지 조성, 경작 등)에 의해 이들 해안단구들이 이미 사라졌거나,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정동진 해안단구는 국내에 존재하는 해안단구 중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일반 도로에서의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원래 지형과 자연환경이 대체로 잘 보존되어 있음
- 따라서 정동진 해안단구 주변의 지형과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 지역 주변의 현상변경허용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측면에서, 강릉시에서 제시한 정동진 해안단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이 지역 해안단구 지형과 자연경관을 현재의 상태에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조건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7.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주변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

가. 제안사항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주변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주변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으로 2014년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된 사항에 대해 탐방로의 해상교량 구간을 축소하여 재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릉시장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37호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50-60 외
 - 지정일 : 2004.04.09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
 - 사업위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심곡리 인근 연안
 - 시설규모
 - 탐방로 : 3.0km(테크보행교, 해상교량 1개소, 전망대)

	항목	수량	주요내용
탐방로	테크보행교		· 목재 및 강재(파랑내습구간) 테크
	해상교량보행교	1개소	· 해안절벽 및 군부대 경계부지에 따른 탐방로 보행단절구간을 해상으로 우회 통과
	콘크리트 보도		· 기존 군 경계순찰로(콘크리트 포장)를 정지 및 보강포장
	전망대		· 쉼터 및 안보 교육장
	출입관리소	2개소	· 심곡항 및 정동항에 각 1개소 · 탐방로를 주간은 관광객 이용, 야간은 군 경계로로 인계
기타 부대공	식	1	· 신재생에너지(태양, 풍력) 전기시설 · 폐초소 철거 및 군부대 감시장비 신설 · 낙석구간 낙석방지막 · 안전난간 및 해안단구 지질학습 안내판

- 사업기간 : 2014. 9월 ~ 2016. 9월
- 총사업비 : 약 70억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외
- (5) 금회 수정내용(해상교량 구간)

구분	당초	변경	비고
해상교량 연장	115m	100m	15m 감
교각 수	5개	3개	2개 감
교각 등 형태	사각	원형	경관 및 파도 등에 의한 영향 최소화

라. 검토의견(***)**

- 해안단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상교량 구간을 최소화 하여 해안단구의 경관 훼손도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사전 현장자문의견/3.20)

<*** 위원장, *** 문화재위원, *** 강원대학교 교수>

- 정동진항 측 해상교량구간은 바다조망을 고려하여 교량계획을 지양하고 군부대 및 민간(토지소유주) 측과 협의하여 군부대 경계로와 기존 산책로를 이용한 육로계획 필요
- 탐방로 개설 시 전망대 설치 필요
- 지질에 대한 설명내용을 수록한 안내표지판 등을 작성하여 이용객들의 학습효과 및 궁금증을 유발하여 걷고 싶은 길로 조성 필요
- 심곡항 측 교량구간은 기존 군 경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낙석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이나 기존 사면의 위험구간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바. 참고자료(현지조사/8.25)

<*** 문화재위원>

- 천연기념물 제437호(2004.04.09.)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는 우리나라의 지질 구조 발달 과정과 퇴적환경, 지각운동, 해수의 침식작용에 의한 해안지형의 발달, 해수면 변동 등의 연구에 중요하고 지질·지형학적 학습장으로서의 가치와 해안경관적 가치가 매우 크나, 현재에는 군사통제구역으로 되어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되고 있음
-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은 한반도 동해안의 해안지형 형성과정의 이해와 다양한 지질구조의 이해 및 해안경관의 감상 등 지질유산의 교육적 활용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 약 3km에 달하는 탐방로 대부분은 기존의 군 경계순찰로를 보강하여 이용하고 해상교량을 100m로 줄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안단구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해상교량이 해안경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량 100m 신설구간에서는 우회토록 하였으나 지주의 반대로 불가하다고 함.
- 따라서 해상교량을 최대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고, 탐방로 요소요소에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위원>

- 정동진 해안단구는 해발 약 80ML에 위치하는 고기 파식대지와 고기 해안단애가 형성하는 화석화한 고 해안지형을 말한다. 신청된 해안 산책로는 이러한 고 파식대지나 고 해안단애를 손상시키는 공사는 아니다. 다만 정동진 해안단구의 지형적 특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의 증거는 원거리에서 정동진 단구를 조망할 때 선명해진다. 따라서 정동진 해안단구는 단구 자체를 훼손하지 않더라도 원경의 경관적 특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정동진의 천연기념물적 가치를 감쇄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청된 시설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군사시설을 활용하고, 이 시설들을 자연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과도하게 설계되어 있던 교량 부분을 최소화하여 설계 수정되었다. 따라서 제시된 설계와 동일한 규모의 구조물 설치에 정동진 해안단구의 천연기념물적 가치를 현격하게 훼손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산책로를 따라 여러 곳에 설치될 예정인 안내판들은 천연기념물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 문화재위원>

- 상기 사업은 강릉시 심곡항으로부터 정동진항에 이르는 해안 구간(길이 약 3 km)에 탐방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2014년 7차 회의에서 해상교량 설치구간의 경관 문제로 인해 부결 처리된 바 있음
- 사업 구간의 배후 지역은 지정구역인 정동진 해안단구를 비롯한 해안단구가 단속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나, 개설코자 하는 탐방로의 대부분 구간이 이 지역 해안경계를 위한 군의 철책과 순찰로 구역인 관계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임

- 따라서 이 탐방로 개설에 의해 해안단구를 비롯한 이 지역 일대의 지질과 지형을 직·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연유산의 활용 효과는 유발될 수 있음
- 당초 안에서 정동진항 남서측 해안 부근에 계획되었던 해상교량의 해안경관 훼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 구간의 대체 경로로 이 지역 배후의 해안 절벽을 종방향으로 가로질러 해안단구면에 이르는 탐방로가 대안으로 제시 되었으나, 지형의 급경사와 절리 발달 등 암반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해상교량의 부분적인 설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변경 안에서는 해상교량의 전체 길이와 교각의 수가 축소되고, 기둥의 형태가 원형으로 변경되는 등, 해안경관 훼손을 부분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해상교량에 의한 이 지역 해안경관 변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 해안지형과의 조화를 위해, 선형을 직각형이 아닌 해안선의 굴곡을 따라 이어지는 형태의 곡선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교량의 길이 축소효과 병행)
- 한편 탐방로 구간에는 해안단구 지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의 암석과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고생대 지층이 연속적으로 펼쳐져 있어, 이들 각종 지질기록을 설명하는 적절한 내용의 안내판이 적소에 설치되어, 이 해안탐방로가 실질적인 자연유산 탐방로로 활용되어야 것임
- 2 년여에 걸친 비교적 장기의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공사과정에서의 낙석 등 안전사고와 오탍수 배출 등 주변 해역의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사. 참고자료(**** 의견)

<***>

- 정동진 해안단구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한 힐링 트레킹 랜드마크 공간 제공 및 지정문화재인 해안단구의 지질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연사 교육장소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화로-심곡항-모래시계공원-정동진역 등 주변 관광지 연계한 지정문화재 관광자원화 활용도 고양 등 기여하고자 함.

아.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8. 「단양 고수동굴」 내부 및 주변 시설물 정비

가. 제안사항

「단양 고수동굴」 내부 및 주변 시설물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단양 고수동굴」 내부 노후화된 관람시설을 교체하고 동굴 주변 낙석방지시설, 배수로 정비 및 방문객 센터 건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6호 「단양 고수동굴」
 - 소재지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130번지 외
 - 지정일 : 1976. 9. 21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고수동굴 내부 및 주변 시설물 정비
 - 사업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번지 외
 - 사업내용
 - 사업 배경 및 목적
 - 1976년 개방 이후 부분적인 보수만 실시하여 노후화된 동굴 내부 관람시설을 교체하여 동굴 보존과 관람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동굴 입구의 낙석방지시설을 개선하여 관람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후화되고 배수용량이 부족하여 폭우 시 동굴수가 넘쳐흐르는 배수로를 정비하여 동굴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람객에게 동굴의 자연유산적 가치를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전시관 등을 포함한 방문객센터를 건립하여 동굴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 세부사업내용

- 동굴 내부시설물 교체(관람로, 조명시설, 설명표지판) 및 환경정비
※ 전체 공개구간 940m 중 동굴 출구구간 240m 우선 교체 정비
- 동굴 입구 낙석방지시설 및 배수로 정비
- 방문객센터 건립 : 지상 2층(1층 231.4m², 2층 429.7m²) 높이 8m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외

라. 검토의견(*****)

- 동굴 보존을 위하여 노후화된 내부시설물의 교체정비와 배수로의 정비가 필요하며, 동굴의 자연유산적 가치 제고 및 관람객 편의 제고,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객센터 건립과 낙석방지시설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방문객센터의 경우 동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계가 완료된 이후 재심의를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8.19)

<*** 문화재위원>

- 천연기념물 제256호(1967.09.01.) ‘단양 고수동굴’은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동굴 생성물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 동굴의 경관이 매우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동굴생성물의 발달 밀도가 가장 높은 동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동굴 관람객의 수도 최상위에 속함.
- 1967.10.01.부터 약 40여 년간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으나, 통행로 등 내부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동굴환경의 악화 및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시설물의 교체와 정비, 낙석방지 시설 보수, 배수로 정비 등이 속히 이루어져야 함.
- 문화재청의 동굴 평가제 도입을 위한 2012년도의 예비평가에서 고수동굴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자연유산 특히 동굴의 관람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교육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이 되지 못하고,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 그치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안내소, 전시실, 간단한 교육실 등등을 갖춘 방문객 센터임.
- 따라서 고수동굴의 현 매표소와 관리사무소 및 여유 공간에 방문객 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센터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가 마련된 후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9.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규사광산 개발

가. 제안사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규사광산 개발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규사광산 개발을 위해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 소재지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 263-1 등 81필지
- 지정일 : 2001.11.30

(3) 신청내용

- 사업명 : 규사광산 개발
- 사업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
- 사업내용
 - 규사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채굴장 및 폐토장용지로 사용 할 계획임
 - 사업면적 : 4,800m²
 - 토량 산출표

NO	거리	질 토 량		
		단면적(m ²)	평균단면적(m ²)	체적(m ³)
NO.0	0	0	-	-
+2.40	2.40	9	4.50	11
NO.1	17.60	257	133	2,341
NO.2	20.0	218	237.50	4,750
NO.3	20.0	155	186.50	3,730
NO.4	20.0	106	130.50	2,610
+15.30	15.30	31	68.50	1,048
NO.5	4.70	13	22	103
+6.0	6.0	0	6.50	39
합계				14,632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으로부터 약270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제3구역으로 평슬라스 2층(8m이하), 경사지붕 2층(11m 이하) 허용

라. 검토의견(*****)

- 사업대상지역은 신두리 해안사구가 형성된 초기의 사구형태가 남아 있는 곳으로 사구의 형성과정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지역이고 사구의 배후 지역이므로 이 지역의 모래 채취는 사구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검토)

<*** 문화재위원>

- 규사 채취 예정지역은 해발 10여m 되는 낮은 구릉지역이고 사구의 연장지역이며,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2층 이하 신축허용)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써, 해안사구 지정구역과 규사 채취 예정지역 사이에는 해발 20여m 되는 낮은 사구 봉우리가 발달함.
- 또한 사구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며, 식생이 안정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지역임.
- 사구의 모래(규사)를 채취하여 원지형을 없애고 평탄화 함은 물론, 제3구역 내의 또 다른 지역에서 규사 채취 허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로 허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문화재위원>

- 신청지는 문화재 지정구역에 근접한 지역으로 현상변경허용기준 3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일정 규모의 구조물 설치는 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대규모 모래의 채취는 사구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현 상태의 사구의 유지는 안정된 지질, 지형적 환경이 지속될 때 가능하다. 지정구역 배후 지역에서의 대규모 굴착은 지질, 지형적 환경의 교란을 야기하게 되므로 천연기념물의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상지역은 현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보호지역으로부터 500m 반경 내에 포함되어 있는 3구역에 속한다.
- 자연적인 지형시스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직접적인 보호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상지역은 신두리 해안사구에 속한다. 즉 해안사구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에 전면부의 사구지대에서 이동되어 온 모래가 사구 배후지역의 경계부까지 이동되어와 쌓인 사구지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 해안사구 시스템의 안정도 측면에서 보면, 이 지역은 해안선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져 있고 그 전면의 사구지대가 모두 곰솔, 아까시나무 등의 목본으로 피복되어 있어 매우 안정적이며, 식물생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초기에 식재되었던 곰솔 사이로 아까시나무와 기타 활엽수들이 침입하여 경쟁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전형적인 사구생태계의 식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사구지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상지역의 전면부에 사구활성기에 형성된 머리핀형사구(hairpin-type dune)가 고정된 상태로 남아 있는데, 정확히 연구된 것은 아니지만, 대상지역은 바로 이 머리핀형사구에서 이차적으로 이동되어 형성된 2차사구이거나 그 이전의 활성기에 별도의 이동과정을 통해 형성된 2차사구일 수 있다. 따라서 지형학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은 신두리 사구지대 중에서 가장 해안선과 먼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신두리 해안사구지대의 형성과정을 정확하게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다. 아직 신두리 해안사구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지역이 사라진다면 이런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을 자칫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바. 참고자료(****<***> 의견)

- 낮은 구릉으로 형성된 당해필지 규사 채취 목적으로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결정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됨

사. 의결사항 : 부결

10.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주변 휴게음식점 및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주변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주변 휴게음식점 및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95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707번지 외
 - 지정일 : 1968.05.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
 - 사업내용
 - 신청 건축면적 : 40.99 m²
 - 신청 연 면 적 : 66.95 m²
 - 구 조 : 일반철골 및 경량철골구조
 - 층 수 : 지상2층
 - 최 고 높 이 : 8.2m
 - 사업기간 : 2014.9월 ~ 2014.12월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으로부터 약124m
 -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1구역으로 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허용기준 1구역)

라. 검토의견 (*****)

- 사업대상지는 허용기준상 1구역(기존 규모 재·개축)으로 지정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검토)

<*** 문화재위원>

-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는 1968.05.29. 천연기념물 제195호로 지정되었으며 2010.12.02.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됨.
- 사업 예정지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기존규모 재·개축 허용)에 해당되며, 신축 예정지 주변에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 이전 타법에 의하여 허가됨(1975.10.; 2001.09.; 2002.01.) 3동의 건물이 있음.
- 또한, 또다른 3개의 각 지번에 있던 3동의 건물은 3개의 지번이 하나로 합병되면서 철거되고, 그 대신 통합된 지번에는 1동의 건물이 신축 허가됨(2007.03.30.).
- 그러나 2012.12.21. 기존 건물과 인접된 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가족호텔) 신축은 해안경관과 화석산지의 훼손우려로 신축이 불허됨.
- 한편, 사업 예정지 동쪽 제1구역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의 증축(1층→2층)도 경관 훼손 우려로 불허된 바 있음(2013.03.27.).
- 따라서 휴게음식점 및 주택 신축은 허용기준 위반과 형평성으로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위원>

- 상기 지역은 신생대 신제3기의 해양패류화석을 다량으로 함유한 서귀포층이 육상으로 연장하여 분포하는 지역으로, 지정구역인 남측 해안으로부터 북측으로 120여 m 떨어져 있으며, 주위는 임야, 과수원, 경작지, 도로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사업 신청지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즉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만 재개축이 허용되는 지역임
- 신청 건은 상기 지역에 위치한 무허가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고 2층 규모의 휴게음식점 및 단독주택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물 신축이 이 지역에 분포하는 서귀포층 퇴적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그러나 이 지역은 패류화석산지로서의 학술적 가치 이외에, 이 지역 남측 해안절벽의 지형경관과 조망 등 경관적 요소가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지역임
- 이와 같은 이 지역(1구역)의 경관적 가치를 고려하여, 신청 지역 주변에서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 2건이 부결된 바 있음(2012.12, 2013.04).
- 따라서 비록 이 지역에서의 건물 신축이 이 지역 화석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지라도, 건물 신축에 의한 이 지역의 경관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으로, 이 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건물증개축과 신축 행위등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지역 자연경관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바. 참고자료(****<****> 의견)

- 당해 신청 부지 내 기존 1층 단독주택(1975.10월허가)과 무허가 조립식 건물이 상존하고 있으며, 금회 무허가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고 2층(휴게음식점 및 단독주택)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첨부된 위치도 화일 중 주변건물 개요를 참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 의결사항 : 부결

11. 「부여 구드래 일원」 내 백제 대중 종각 설치

가. 제안사항

「부여 구드래 일원」 내 백제 대중 종각 설치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구드래 일원」 내 백제 대중 종각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부여군수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

-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1번지 등
- 지정일 : 2009. 12. 9.

(3) 신청내용

- 사업명 : 백제 대중 종각 설치
- 사업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백제대중 건립은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구드래에 부여군을 상징하는 백제대중을 건립함으로써 인접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 도모
- 사업규모 : 백제 대중 종각 1동 신축
 - 면적 : 65.61㎡(19.8평)
 - 높이 : 9.9m(기단 1.17m, 건물 8.74m)
 - 구조 : 한식 목구조 2고주 5량가, 1층
 - 양식 : 하양계 주심포(팔작지붕)
- * 종 규격 : 높이 3m, 무게 3,000관(11톤)

○ 사업기간 : 허가일 ~ 2016. 6. 30.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

라. 검토의견 (*****)

- 「부여 구드래 일원」 문화재 지정구역 내 설치 건으로 명승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위원 현지조사 검토의견)

- 본건은 부여 구드래 조각공원 내 종각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군내 문화 중심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구드래와 조각공원의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부결

12.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내 및 「부안 격포리 후박나무 군락」 주변 태양광 모듈 설치

가. 제안사항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14.4차, 6차 위원회에서 불허된 건으로 재신청한 사안임.

<참고> 2014. 4차, 6차 위원회 불허 처분

- * 불허사유 : 문화재 지정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태양광 모듈의 설치 규모가 크고 태양광 모듈의 특성상 빛이 반사되는 재질로 인하여 심각한 명승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인근 '후박나무 군락지' 생육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주)*****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13호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천연기념물 제123호 부안 격포리 후박나무군락

○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 등

○ 지정일 : 2004.11.17(명승), 1962.12.7(천연기념물)

(3) 신청내용

○ 사업명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사업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

○ 사업내용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종묘사업소 상부에 태양광 모듈 설치

- 면적 : 3,426㎡, 발전방식 : 고정식(경사 고정형) 용량 : 472.26kw/1일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36개월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외

라. 검토의견 (*****)

-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지정구역이며 「부안 격포리 후박나무 군락」 인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시설 설치에 따라 후박나무 식생 및 명승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 문화재 위원 현지조사 검토의견)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종묘사업소는 명승지역과 천연기념물 후박나무 자생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들이 무질서하게 배치되고 노후되어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임
- 태양광 모듈 설치를 600kw에서 472kw로 축소하여 재신청하였으나 직접 영향권에 있는 북쪽 천연기념물(후박나무)과 인접한 건물이 포함되기도 하며, 종묘사업소의 특성상 지붕이 일정하지 않아 경관 저해요인 가능한 건물, 연결통로도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태양광 사업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해종묘사업소와 이미 계약된 사업임을 감안할 경우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대상을 대폭 축소할 경우 남쪽편 부1,2와 부3(약 250kw)에 한하여 지붕과 밀착형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주변에는 명승과 천연기념물이 함께 지정된 중요한 지역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 문화재 전문위원 현지조사 검토의견)

- 본 태양광 모듈 설치 장소는 천연기념물 제123호 부안 격포리 후박나무군락과 매우 근접한 지역으로, 태양광 모듈 설치사업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이 나타날 개연성이 매우 큰 지역으로 판단되어 그간 2차례의 현상변경 요구를 불허하고 최소한의 용량으로 모듈 설치를 제안한 바 있음
- 현장답사 결과, 인접지역의 태양광 모듈 설치를 제외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음영(陰影) 등으로 인한 후박나무군락의 환경 저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증언과 자료 확인 결과, 짙은 감청색으로 이루어진 태양광 모듈은 태양빛에 대한 알베도(albedo : 반사율)는 현저히 낮아 막연한 우려와 같이 태양빛 반사로 인한 후박나무의 생육 지장 우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해당 지역이 채석강을 시점으로 할 때 주요 경관대상으로 조망되는 명승 권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대규모 태양광 모듈로 지붕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경관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최소 규모의 모듈과 설치 위치 및 각도 등 조정에 따른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통한 최적안(最適案)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 설계도상에 예시된 어류1동과 어류2동 사이 연결통로의 모듈 설치는 부정적 시지각 강도를 높이고 돌풍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성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재고해야 마땅함

- 따라서 제안한 사업 내용 중 부안중묘사업장 건물 중 표면 단면적이 가장 큰 배양 3개동을 중심으로 지붕 일체형 태양광 모듈을 집약적으로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천연기념물 제123호 부안 격포리 후박나무군락의 생육환경 및 명승 제13호 부안 채석강 및 적벽강 일원 경관의 시지각적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3개 동을 중심으로 한 최소 모듈 규모의 범위 내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허용하는 조건부 수용을 주문함

(** 의견)**

- 금회 신청 건은 명승경관 및 후박나무 군락지 생육을 고려 태양광 모듈 설치 면적을 줄여 발전 용량을 472kw로 축소하고 지붕형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여 경관 개선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였음
-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설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대체 에너지 개발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기존 노후화되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붕재를 교체하여 주변 경관상 개선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공공 시설물의 보수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부결

13. 「제천 의림지와 제림」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변경 허가

가. 제안사항

「제천 의림지와 제림」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 주택 신축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변경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천 의림지와 제림」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기 허가 사항을 변경 신청한 사항임.

<참 고>

- 2013.10.4 단독주택 신축 허가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20호 제천 의림지와 제림
 - 소 재 지 :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산17-6
 - 지 정 일 : 2006. 12. 4.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택 신축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산*****
 - 변경 신청내용

구 분	신 청 내 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내용	단독주택 신축	휴게음식점 및 단독주택 신축	○ 용도변경 및 휴게음식점 추가(60㎡) ※건축주 사업 계획 변경
연 면 적	162.6㎡ (1층 81.3㎡/2층 81.3㎡)	223.89㎡ (1층 124.44㎡/2층 99.45㎡)	
구 조	흙벽돌	철근콘크리트	
높 이	2층 / 11.03m	2층 / 8.88m	
지 붕	경사지붕(아스팔트싱글)	경사지붕(S형기와)	
외 벽	스타코프렉스 및 인조석 붙임	점토벽돌 치장쌓기 마감	

- 사업기간 : 2013. 10. 4 ~ 2014. 10. 31일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으로부터 210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1구역으로 기존 규모 범위내 재·개축 허용

라. 참고자료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신청 사업은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이미 허가된 사업을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변경하고 건축연면적을 61㎡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업임.
- 신청 건축물의 형태는 기 허가된 건물과 비교해 별 문제는 없으나, 문화재청의 승인 없이 시공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으로, 상응하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대지 상부 및 하부에 설치한 옹벽과 석축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본 신청 건은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이미 허가된 사업을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변경하고 건축연면적을 61㎡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업임.
- 신청 건축물의 형태는 기 허가된 건물과 비교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문화재청의 승인 없이 시공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임으로, 상응하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임.
- 대지 상부 및 하부에 설치한 석축은 미관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옹벽 및 석축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14. 「부산 영도 태종대」 내 **** ** 생활관 건립

가. 제안사항

「부산 영도 태종대」 내 **** ** 생활관 신축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 영도 태종대」 내 **** ** 생활관 신축 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참고> 2014. 7차 위원회 불허

* 불허사유 : 생활관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수령 100년 이상 해송 1그루가 제거되고, 3-4그루는 뿌리가 절단되어야 하는 등 문화재 보존 및 주변 경관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17호 부산영도 태종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29-1번지 등

○ 지정일 : 2005. 11. 1.

(3) 신청내용

○ 사업명 : **** ** 생활관 건립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에 따라 기존 *****에 *****을 이동하여 ****함으로써 사용인원 증가 및 ***** 면적이 부족하여 증축 소요 발생.

구분	내 용	면 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①	생활관(지상2층-철근콘크리트조) 증축	1층	114.83m ²	184.25m ²
		2층	110.18m ²	
		소계	225.01m ²	
②	기존 정화조 철거 후 정화조(지하-규격10.0*4.1*4.0) 설치 및 정화조 기계실(지상1층) 설치	정화조	BOX 10.8*4.9*3.7	
		정화조 기계실	10.89m ²	
③	기존 족구장(30m ²) 절토 및 평탄화 작업			202.98m ²
④	기존 진입도로 포장(콘크리트포장)			104.64m ²
합 계			235.90m ²	544.79m ²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5. 7. 31일까지

※ 7월 신청 사업계획 대비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신축건물	소나무를 훼손하여 건물위주로 기존건물과 직각으로 배치함.	소나무 훼손을 하지 않고 소나무에서 약 2.5m 이격하여 건물배치를 변경함.	부분배치도 참조
정화조	기존 정화조 철거 후 정화조 재설치.	기존 정화조 철거 후 정화조 재설치하고 지상에 정화조 기계실(11m ²)을 설치.	정화조 도면 참조
족구장	족구장의 레벨을 기존마당과 같이 하도록 약 1.2m 절토하여 족구장을 넓게 쓰고자 함.	기존 족구장 절토(30cm) 및 평탄화하여 기존 수목을 보호함.	족구장 도면 참조
진입도로	기존 진입도로 포장(콘크리트 포장) 104.64m ²	기존 진입도로 포장(콘크리트 포장) 104.64m ²	변경 없음. (진입도로 포장 도면 참조)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부산 영도 태종대」 문화재 지정구역 내 신축 건물로 명승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가결

15.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내 사방댐 설치

가. 제안사항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내 사방댐 설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내 사방댐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6호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 소 재 지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1 외
 - 지 정 일 : 1979. 12. 11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사방사업(사방댐 설치)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하원리 ****번지 외
 - 신청내용
 - 사업목적 : 계상에 퇴적되어 있는 석력의 이동을 방지하며, 토사 유출로 인해 하류 하천의 하상 상승으로 인한 홍수 피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 토공 : 토사 1,010m², 암절취 155m², 구조물터파기(토사) 293m², 구조물터파기(암) 107m², 구조물 되메우기 280m², 성토 425m², 잔토 처리 1,053m²
 - 구조물공 : 혼합쌓기 사방댐 1개소, 야면석 기슭막이 등
 - 녹화공 : 떼붙임(평떼) 164.5m², 떼붙임(졸떼) 318.6m², 홍단풍 식재 20주, 개나리 식재 60주
 - 부대공 : 원형목웁스 15경간, 가도개설 1식
 - 사업기간 : 허가일 ~ 2014. 12. 31일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문화재 지정구역 내 사방댐 설치 건으로 명승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 문화재위원 ** 검토의견)**

- 상기 사업은 불영사 계곡에 유입되는 지천의 계상에 쌓여 있는 자갈과 모래 등의 퇴적물 유입이 본류의 하상 상승을 유발시킴에 따른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불영사 계곡의 범람에 의한 지형 훼손 방지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사방공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토사 절취와 각종 구조물 설치 등 토공, 구조물공, 녹화공, 부대공 등 공사의 규모가 비교적 큼으로, 이 공사에 의한 지형과 경관변화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에 의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 검토의견)**

- 해당사업은 국토의 보존과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필요한 사업으로 이해된다. 다만, 명승 제6호는 우리 국민의 중요한 자연유산이므로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필요 불가결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훼손을 극소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 신청 사업 중 사방댐의 경우는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 명승의 가치를 저해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명승 제6호는 자연 명승적 가치가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소계곡 사면에 설치될 예정인 야면석 기슭막이나 바닥막이, 원형목 웅스, 가도 개설 등 인공구조물의 설치는 자연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바. 의결사항 : 보류

16.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내 불영사 진입도로 확장

가. 제안사항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내 ‘불영사 진입도로 확장 사업’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내 불영사 진입도로 확장 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6호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 소재지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 121 외

○ 지정일 : 1979. 12. 11

(3) 신청내용

○ 사업명 : 불영사 진입도로 개선 공사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하원리 산**** 외

○ 신청내용

- 사업목적 : 불영사 진입도로 개선공사로서 관내 불합리한 교차로의 구조 개선으로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및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아스콘 포장 : A=550m²

· 보강토 옹벽 : L=96.0m

· 성토사면 녹화(초류종자 살포) : A=411.0m²

· 부대공 : 1식

○ 사업기간 : 허가일 ~ 2014. 12. 31일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문화재 지정구역 내 불영사 진입도로 개선 사업
건으로 명승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보류

17. 「공주 고마나루」 내 탐방로 정비 및 휴게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공주 고마나루」 내 탐방로 정비 및 휴게시설 설치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공주 고마나루」 내 탐방로 정비 및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공주시장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지정일 : 2006. 12. 4.

(3) 신청내용

- 사업명 : 탐방로 정비 및 휴게시설 설치

- 사업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산*****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조명등 설치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의 역사문화자원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방문객 탐방을 유도하여 관광활성화 기대코자 함

- 사업내용

- 탐방로 정비 : L=541.4m

- 휴게시설 설치 1식

- 전선관 매설 : L=250m

- 옥외잔디등 18개 설치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4. 12. 31일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공주 고마나루」 문화재 지정구역 내 탐방로 정비 및 휴게시설 설치 건으로 명승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 문화재위원 ** 검토의견)**

- 본건은 공주 고마나루 역사환경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제방안쪽의 녹지대에 탐방로정비 및 휴게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탐방로 정비 구간이 길고 (L=541.4m), 옥외잔디 등 18개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은 고마나루 경관의 유지를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바. 의결사항 : 부결

18. 「속리산 법주사 일원」 내 다목적 교육관 신축

가. 제안사항

「속리산 법주사 일원」 내 다목적 교육관 신축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속리산 법주사 일원」 내 다목적 교육관 신축 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법주사 주지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 소재지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 1-1번지 등
- 지정일 : 2009. 12. 9.

(3) 신청내용

- 사업명 : 법주사 다목적 교육관 신축
- 사업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전해오는 불교문화의 의식주에 대하여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함과 아울러 전통문화 체험 시설의 건립으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에 목적이 있음

- 사업내용

- 규모 : 지하 1층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연면적 : 1,670m²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5. 12. 31일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속리산 법주사 일원」 문화재지정구역 내 법주사 다목적 교육관 신축 건으로 규모, 위치 등 명승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 전문위원 ** 검토의견)

- 법주사 다목적교육관 설립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조성계획은 경관적으로 고려를 많이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건립부지의 위치가 법주사 사천왕사로부터 120여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법주사 주진입 동선상에 위치해 있어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사찰의 진입공간 구조는 “일주문-사천왕문-불이문-대웅전”으로 되어 있는데 다목적교육관의 입지는 진입공간구조로 보았을 때 사찰 내 건립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다목적교육관 건립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바. 의결사항 : 보류

【보고사항】

천기 2014-08-19

19.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45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 신청인 : 대구광역시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대구시 중구 ○ 허가사항 : 소각(폐사에 따른 소각)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 ***/충남 논산시 ○ 허가사항 : 사육 ○ 수량 : 2개체 ○ 목적 : 원앙의 증식 및 연구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1호 올빼미	○ 신청인 :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시소장/충북 제천시 ○ 허가사항 : 매장(폐사에 따른 매물처리)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 신청인 : 한국산양보호협회장/강원도 양구군 ○ 허가사항 : 매장(폐사에 따른 매물처리)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 신청인 : 경기도야생동물구조센터장/경기 평택시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1개체 ○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324-6호 소쩍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경기도야생동물구조센터장/경기 평택시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2개체 ○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3호 솔부엉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경기도야생동물구조센터장/경기 평택시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2개체 ○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경기도야생동물구조센터장/경기 평택시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2개체 ○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경기도야생동물구조센터장/경기 평택시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1개체 ○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7호 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경기도야생동물구조센터장/경기 평택시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1개체 ○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4호 새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경기도야생동물구조센터장/경기 평택시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2개체 ○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2호 붉은배새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경기도야생동물구조센터장/경기 평택시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1개체 ○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경기도야생동물구조센터장/경기 평택시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1개체 ○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장/서울 관악구 ○ 허가사항 : 매장 ○ 수량 : 1개체 ○ 사유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육림랜드동물원)/강원 춘천시 ○ 허가사항 : 사육 ○ 수량 : 2개체 ○ 사유 : 구조 치료 후 영구 장애를 입은 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7호 큰소쩍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육림랜드동물원)/강원 춘천시 ○ 허가사항 : 사육 ○ 수량 : 2개체 ○ 사유 : 구조 치료 후 영구 장애를 입은 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장/충북 제천시 ○ 허가사항 : 매장(폐사에 따른 매몰)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동물병원장/경북 경주시 ○ 허가사항 : 소각(폐사에 따른 소각)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거제시장/경남 거제시 ○ 허가사항 : 소각(폐사에 따른 소각)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임실군수/전북 임실군 ○ 허가사항 : 매장(로드킬에 의한 폐사)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251호 창덕궁 다래나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국립산림과학원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시료채취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 등 - 사업내용 : 유전자원 보존 및 복제묘 육성용 시료 채취(6건) · 대상문화재 : 창덕궁 다래나무(천기 제251호), 창덕궁 향나무(천기 제194호), 창덕궁 뽕나무(천기 제471호), 창덕궁 회화나무(천기 제472호), 서울 영취원 산사나무(천기 제506호),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천기 제479호) ○ 허가기간 : 2014.8.6. ~ 2014.8.8.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텔레콤(주) ○ 허가사항 : **텔레콤 통신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도서지역 통신용 - 대지면적 : 20.25㎡(4.5m×4.5m) - 높이 : 18m(1개소) - 재료 : 철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72번지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2015.6월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허가사항 : 에코델타시티 기본 및 실시설계 지반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델타시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구 내 분포하는 지층상태 파악 - 사업내용 : 지질조사 시추 33공(76mm) - 조사위치 : 부산 강서구 명지동 608-1179 제 등 33개소 ○ 허가기간 : 허가일~2014.12.31 ○ 조건 : 시추공 폐공처리는 지하수법에 따라 처리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주)***엔지니어링 ○ 허가사항 : 에코델타시티 2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지반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델타시티 2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구 내 분포하는 지층상태 파악 - 사업내용 : 지질조사 시추 16공(76mm) - 조사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5095-7외 15개소 ○ 허가기간 : 허가일~2014.10.31 ○ 조건 : 시추공 폐공처리는 지하수법에 따라 처리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주)**** ○ 허가사항 : 에코델타시티 기본 및 실시설계 지반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델타시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구 내 분포하는 지층상태 파악 - 사업내용 : 지질조사 시추 18공(76mm) - 조사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3508 등 18개소 ○ 허가기간 : 허가일~2014.10.31 ○ 조건 : 시추공 폐공처리는 지하수법에 따라 처리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낙동강관리본부장 ○ 허가사항 : 안내간판(QR코드) 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숙도 철새공원 내 홍보용 안내간판 설치 (6개소) - 사업위치: 을숙도 철새공원 내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90일 	<허가>
	천연기념물 제322호 무주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표고버섯 저장 저온창고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고버섯 저장 저온창고 신축 - 사업위치: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번지 ○ 허가기간 : 허가일~2016.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텔레콤(주)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통신기지국 컨테이너 설치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성판악 통신기지국 부지시설 내) - 사업내용 : 컨테이너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48㎡(높이4m, 가로8m, 세로6m) * (용도) 한전 전력망 유지보수(공공안전망), 공용기지국 조성 ○ 허가기간 : 2014.8.11. ~ 2014.10.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66호 담양 관방제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건축물 용도변경 - 사업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 - 사업내용 : 용도변경(단독주택→일반음식점/84.02㎡) ○ 허가기간 : 2014.8.18. ~ 2014.10.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 사업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12 - 사업내용 : 국도44호선 한계령 22지구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석방지망 설치(35m길이, 190㎡), 기대기식옹벽 (15m길이, 9m높이, 135㎡), 수목제거(53㎡) ○ 허가기간 : 2014.8.18. ~ 2015.6.30.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산불감시카메라 및 전기·통신관로 설치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감시카메라 2대[사라오름(폴대 6m, 부지 16㎡), 세오름(기존 통신기지국 이용)] · 전기·통신관로 816m, 통신관로 3,260m 설치 * (사라오름~사라오름 입구) : 전기·통신관로 816m [(전기) ELP관 100mm, (광) PE관, 28mm] * (남벽분기점~윗세오름통제소) : 통신관로 2,260m (고장력 FLEX 36C) * (어리목 입구~어리목광장 기지국) : 통신관로 1,000m (고장력 FLEX 36C)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감시카메라 및 전기·통신관로가 관람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하고, 전기·통신관로 설치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선로에 통합하여 설치 - 사업시행에 따른 출입 시 기존 식생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 허가기간 : 2014.8.18. ~ 2015.6.30.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상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함양군수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함양상림 주변 천년교 및 대죽교 경관조명 설치 - 사업위치 : 경남 함양읍 운림리 370번지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년교 : 광파이프 라인조명 58개의 5중 · 대죽교 : 광파이트 보행등 신설 등 ○ 허가기간 : 2014.8.18. ~ 2015.06.30. 	<허가>
	명승 제17호 부산영도 태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 허가사항 : 영도등대 주변 해맞이 쉼터 그늘막 설치 및 데크시설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늘막 : 면적 42㎡, 높이 2.4m - 데크시설 정비 : 20㎡(그늘막 설치장소) ○ 허가기간 : 2014-07-29 ~ 2014-12-31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공주시장 ○ 허가사항 : 백제문화 체험장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 112.80㎡(지상1층 2개동) - 높이 : 7.32m - 구조용도 : 관광휴게시설 - 구조 : 한식목구조 ○ 허가기간 : 2014-08-04 ~ 2014-12-31 	<허가>
	명승 제77호 제주서귀포 산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서귀포시장 ○ 허가사항 : 자전거 도로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인프라 구축(L 1.66km, B 3m), - 전석 쌓기(L 604.4m, H 2m) ○ 허가기간 : 2014-08-19 ~ 2015-02-08 	<허가>
	명승 제86호 함양 화림동 거연정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중중 ○ 허가사항 : 봉전 문화예절관 건립(교육연구시설 3동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연면적 : 104.85㎡/104.85㎡ - 교육연구시설 3동 : 생활관, 사당, 화장실 -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 목구조/ 기와지붕 - 높이 : 서원 7.8m 사당 5.97m, 화장실 4.39m, 문 3.88m ○ 허가기간 : 2014-08-19 ~ 2018-08-31 	<허가>
	명승 제16호 예천 회룡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농촌체험마을 ○ 허가사항 : 레포츠 대여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10대, 전기스쿠터 10대 - 장비보관용 천막 설치 2동(길이6m*폭3m*높이2.5m) ○ 허가기간 : 2014-08-20 ~ 2016-06-30.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395호 진주 가진리 새발자국과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교육대학교 교수)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새발자국 모식표본 복제품 제작 - 사업위치 : 경남 진주시 진성면 진의로 ***** - 사업내용 : 새발자국 화석(Ignotornis gajinensis) 복제품 3점 제작 ○ 허가기간 : 2014.8.22 ~ 2014.9.30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443호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중문농업협동조합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자동화기기 365코너 부스 설치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2768-1 (중문 주상절리대 방문객센터 외벽) - 사업내용 : 자동화기기 365코너 부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스규격 : 1,582mm*2,417mm*2,716mm · 용도 : 자동화기기 코너 ○ 허가기간 : 2014.8.22. ~ 2014.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366호 제주 한림용암동굴지 대(소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돈사 증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협재리 *** - 사업내용 : 기존 돈사 16동 1,655.51㎡ 철거 후 3동 1,650.0㎡ 건축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설물 처리시설을 완벽히 하여 주변환경이 오염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 · 터파기 등으로 동굴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를 할 것 ○ 허가기간 : 2014.8.22 ~ 2015.3.31 	<허가>
	천연기념물 제413호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 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국도31호선 영월 ~ 방림3 도로건설공사 - 사업위치 : 강원도 영월군 북면 문곡리 345-6전 일원 - 사업내용 : 기존 국도 일부 선형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전교차로~문곡교차로 6.7km 구간 ○ 허가기간 : 2016.1.1. ~ 2024.12.31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신흥사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휴게소 및 식당건립(6동) -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 - 사업내용 : 휴게소 및 식당건립(6동) <변경허가 사항> <table border="1" data-bbox="480 600 1297 1193"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40%;">당초</th> <th style="width: 50%;">변경</th> </tr> </thead> <tbody> <tr> <td>휴게음식점</td> <td>164.7㎡, 지상1층, 한식목구조 “—”자형, 정면5칸, 측면3칸</td> <td>위치변경</td> </tr> <tr> <td>식당, 커피숍</td> <td>135㎡, 지상1층, 한식목구조 “—”자형, 정면5칸, 측면3칸</td> <td>위치변경</td> </tr> <tr> <td>식당</td> <td>126㎡, 지상1층, 한식목구조 “ㄴ”자형, 정면6칸, 측면3칸</td> <td>위치변경 / 135㎡, 지상1층, 한식목구조 “—”자형, 정면5칸, 측면3칸</td> </tr> <tr> <td>휴게소 (식당A)</td> <td>197.84㎡, 지상2층, 목구조 “T”자형</td> <td>위치변경</td> </tr> <tr> <td>휴게소 (식당B)</td> <td>137.7㎡, 지상1층, 목구조 “ㄱ”자형</td> <td>위치변경 / 135㎡, 지상1층, 한식목구조 “—”자형, 정면5칸, 측면3칸</td> </tr> <tr> <td>휴게소 (식당C)</td> <td>135㎡, 지상1층, 목구조 “—”자형</td> <td>*변경없음</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기간 : 2014.3.31. ~ 2015.12.31. 	구분	당초	변경	휴게음식점	164.7㎡, 지상1층, 한식목구조 “—”자형, 정면5칸, 측면3칸	위치변경	식당, 커피숍	135㎡, 지상1층, 한식목구조 “—”자형, 정면5칸, 측면3칸	위치변경	식당	126㎡, 지상1층, 한식목구조 “ㄴ”자형, 정면6칸, 측면3칸	위치변경 / 135㎡, 지상1층, 한식목구조 “—”자형, 정면5칸, 측면3칸	휴게소 (식당A)	197.84㎡, 지상2층, 목구조 “T”자형	위치변경	휴게소 (식당B)	137.7㎡, 지상1층, 목구조 “ㄱ”자형	위치변경 / 135㎡, 지상1층, 한식목구조 “—”자형, 정면5칸, 측면3칸	휴게소 (식당C)	135㎡, 지상1층, 목구조 “—”자형	*변경없음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분	당초	변경																					
휴게음식점	164.7㎡, 지상1층, 한식목구조 “—”자형, 정면5칸, 측면3칸	위치변경																						
식당, 커피숍	135㎡, 지상1층, 한식목구조 “—”자형, 정면5칸, 측면3칸	위치변경																						
식당	126㎡, 지상1층, 한식목구조 “ㄴ”자형, 정면6칸, 측면3칸	위치변경 / 135㎡, 지상1층, 한식목구조 “—”자형, 정면5칸, 측면3칸																						
휴게소 (식당A)	197.84㎡, 지상2층, 목구조 “T”자형	위치변경																						
휴게소 (식당B)	137.7㎡, 지상1층, 목구조 “ㄱ”자형	위치변경 / 135㎡, 지상1층, 한식목구조 “—”자형, 정면5칸, 측면3칸																						
휴게소 (식당C)	135㎡, 지상1층, 목구조 “—”자형	*변경없음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농업회사법인(주)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감귤양조장 신축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 외 - 사업내용 : 감귤양조장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1층, 지하1층, 건축면적 653.19㎡, 연면적 789.27㎡, 폐수처리시설 30㎡/일 ○ 허가기간 : 2013.12.16. ~ 2015.3.31. <변경허가 사항> 연면적 변경 및 지하1층 용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변경 : (당초) 789.27㎡ → 783.51㎡(△5.76㎡) ○ 지하1층 용도변경 : (당초) 물탱크실 → (변경) 공장-숙성실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낙동강관리본부장 ○ 허가사항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선착장 조성 및 생태탐방선 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구간 : 을숙도~화명생태공원(14km 구간), 선착장 2개소(을숙도, 화명) - 운항시기 : 4월~10월(철새도래시기 운항금지)/09~18시/주중 1일 2회/주말1일3회 - 운항속도 : 10노트(18.52km/hr) - 선박제원 : 20톤급(L=20m / 선폭(B)=4.5m / 30~50인승) ○ 을숙도 선착장 조성 <table border="1" data-bbox="496 725 1284 1050"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ad3;">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45%;">변경 전</th> <th style="width: 45%;">변경 후</th> </tr> </thead> <tbody> <tr> <td>허가기간</td> <td>허가일 ~ 2014.08.30</td> <td>허가일 ~ 2016.08.30</td> </tr> <tr> <td rowspan="2"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선착장설치내용</td> <td>진입도교공 L=20.0m, B=3.0m</td> <td>진입도교공 L=15.0m, B=3.0m</td> </tr> <tr> <td>부대공 • 관리동(L8.40×L2.80×H3.45m) • 화장실(L9.21×L2.50×H3.50m)</td> <td>• 관리동(L9.0×L3.0×H3.45m) • 화장실(L6.15×L3.0×H3.50m)</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63번지 ○ 허가기간 : 2013.10.25~2014.8.30 ○ 허가기간 변경허가 : 2013.10.25~2016.8.30 ○ 변경사유 : 공기부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선착장 설치 공사 일부 변경 ○ 허가조건 : 선박규모, 운항횟수, 선착장 추가 조성 등 운항계획 변경 시 사전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것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허가기간	허가일 ~ 2014.08.30	허가일 ~ 2016.08.30	선착장설치내용	진입도교공 L=20.0m, B=3.0m	진입도교공 L= 15.0m , B=3.0m	부대공 • 관리동(L8.40×L2.80×H3.45m) • 화장실(L9.21×L2.50×H3.50m)	• 관리동(L 9.0 ×L 3.0 ×H3.45m) • 화장실(L 6.15 ×L 3.0 ×H3.50m)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허가기간	허가일 ~ 2014.08.30	허가일 ~ 2016.08.30												
선착장설치내용	진입도교공 L=20.0m, B=3.0m	진입도교공 L= 15.0m , B=3.0m												
	부대공 • 관리동(L8.40×L2.80×H3.45m) • 화장실(L9.21×L2.50×H3.50m)	• 관리동(L 9.0 ×L 3.0 ×H3.45m) • 화장실(L 6.15 ×L 3.0 ×H3.50m)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한전 합천지사장 ○ 사업내용 : 해인사 계통보강 공사 ○ 허가변경사항 : 허가기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2014. 6. 17 ~ 2014. 7. 31. (변경) 2014. 6. 17 ~ 2014. 9. 24. ○ 변경사유 : 사업구간 내 암반층에 대한 시공방법 재검토 기간 필요 	<허가사항 변경허가>											

나. 의결사항 : 접수